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를 이용한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보장기관 등에게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부 절차 마련 근거 규정(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 확인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한 대출금에 관한 자료 등 추가(안 [별표 1] 제25호)

다.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보장기관이 효율적으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동법 제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수급자격 조사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및 「한국전력 공사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료 체납 추이 등 정보 추가(안 [별표 2] 제5호거목 및 너목)
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 및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간의 업무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을 추가하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신청·발굴 및 조사에 필요한 정보 등의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안 [별표 3] 제14호 및 안 [별표 4] 제14호)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절차”를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활용 지원”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를 사회보장 관련 예측조사,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정보 활용 신청, 제공,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사회보장정보 관련 정책과 제공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정보 제공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정보의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활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 제25호 중 “관한”을 “관한 자료,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지원을 위해 해당 사업수행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한 대출금에 관한”으로 한다.

별표 2 제5호거목을 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 및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거. 별표 1 제12호, 제21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료
- 너. 「한국전력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주택용(주거용으로 한정한다) 전기료 체납 추이, 전기 사용량 변화 등 이상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
- 별표 3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별표 4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신청·발굴 및 조사에 필요한 정보, 제11조에 따른 퇴원환자 등의 연계에 필요한 정보, 제14조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에 필요한 정보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① (생략) <u><신설></u>	제1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를 사회보장 관련 예측조사, 연구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정보 활용 신청, 제공,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사회보장정보 관련 정책과 제공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정보 제공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정보의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③ ----- ---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활용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 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 수급자격 확인 조사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제3조제2항 관련)

1. ~ 24. (생략)

25. 국가보훈부, 지방자치단체,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에서 보유한 대출금에 관한 자료

26. ~ 30. (생략)

[별표 2] 수급자격 확인 조사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제3조제2항 관련)

1. ~ 4. (생략)

5. 그 밖의 정보

가. ~ 하. (생략)

거. <신설>

너. <신설>

[별표 1] 수급자격 확인 조사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제3조제2항 관련)

1. ~ 24. (현행과 같음)

25. 국가보훈부, 지방자치단체,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에서 보유한 대출금에 관한 자료,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제공받아 보유한 대출금에 관한 자료

26. ~ 30. (현행과 같음)

[별표 2] 수급자격 확인 조사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제3조제2항 관련)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정보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별표 1 제12호, 제21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료

너. 「한국전력공사법」 제2조에

거. (생략)

[별표 3]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 13. (생략)

14. <신설>

15. (생략)

[별표 4]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4조의2제3항 관련)

1. ~ 13. (생략)

14. <신설>

다른 한국전력공사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주택용(주거용으로 한정한다) 전기료 체납 추이, 전기 사용량 변화 등 이상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

더. (현행 거목과 같음)

[별표 3]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 13. (현행과 같음)

14.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15. (현행 14호와 같음)

[별표 4]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4조의2제3항 관련)

1. ~ 13. (현행과 같음)

14.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신청·발굴 및 조사에 필요한 정보, 제11조에 따른 퇴원환자 등의 연계에 필요한 정보, 제14조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에 필요한 정보 및 제15조부

15. (생략)	<u>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u> 15. (현행 14호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연 락 처	(044) 202 - 3144